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시상규정

제정 2021.09.24.

제1조(목적) 경상북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동계·하계)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들의 공적에 대한 격려와 시상을 함에 있어 객관성 있는 시상제도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시상범위) 본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선수 및 관계기관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단, 지도자 시상은 성과금으로 지급하며, 고등부를 제외한 대학·일반부 선수를 입상토록 지도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팀 또는 종목단체장으로부터 지도자 증명이 확인된 자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시상은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에 실시하며, 해외 선진지 견학은 연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상부문) 제2조에 대한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시상한다.

1. 해외 선진지 견학(해당 종목단체장의 추천으로 1명 선정함)

- 종합입상경기단체(1, 2, 3위)
- 종합성적성취경기단체
- 견학기간(10일 이내)

다만, 본회 예산범위 내에서 견학경비 및 기간을 조정하여 지원한다.

2. 표창수여

[공로패]

- 종합 1, 2, 3위에 입상한 종목단체회장
- 종합성적 성취단체 회장
(전대회 대비 100%이상 향상종목으로 총점 1,000점이상 단체)

[표창패]

- 종합 1, 2, 3위에 입상한 종목단체의 사무국장
- 종합성적 성취단체 사무국장
(전대회 대비 100%이상 향상 종목으로 총점 1,000점이상 단체)

[표창장] 입상선수 지도자.

[특별표창] 특별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사장] 입상선수 소속단체장

3. 시상금 또는 시상품 및 성과금은 별표 1, 2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한다.
4. 육상종목의 종합입상 단체에 대한 시상은 트랙, 필드, 마라톤 부문으로 각각 시상한다. 단, 해외선진지 견학은 종합입상 기준으로 1명을 선정한다.
5. 종합입상경기단체와 종합성적 성취종목단체는 별도 시상한다.

부 칙 (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별표 제1호]

시상금 내역표

(단위 : 원)

구 분		시 상 금
총 합	종합 우승 단체	3,000,000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
	종합준우승 단체	2,000,000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
	총 합 3 위 단체	1,500,000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
성 취	종합성적성취 단체	1,000,000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
유 공	특별 유공 단체	1,000,000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상품

구 분		시 상 금
신기록	세계 신기록	1,000,000
	한국 신기록	300,000
	대회 신기록	100,000
다년패	팀 3년패 이상	500,000
	개인 3년패 이상	200,000
입 상 선 수	1위	200,000
	2위	150,000
	3위	100,000

[별표 제2호]

성과금 내역표

(단위 : 만원)

구분	기준	해당종목	지급액		
			금	은	동
개인경기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으로 분류된 종목 ※단,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스프린트, 개인전)은 메달획득점수가 5점이상 이어야 하며, 메달점수로만 채점하는 종목은 확정배점이 적용될 때까지 지급액의 50%지급한다.	육상, 수영,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승마, 태권도, 조정, 롤러, 세일링, 카누, 우슈, 보디빌딩, 핀수영, 스퀘시,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산악, 당구, 댄스스포츠	300	150	80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 하는 종목의 개인전 ※바둑은 확정배점이 적용될 때까지 개인전, 혼성페어는 지급액의 50%, 단체전은 100%으로 지급한다.	양궁(개인종합,거리별) 사격(개인전) 체조(개인종합및 종목별) 펜싱(개인전) 배드민턴(개인전), 볼링(마스터즈개인전, 2인조) 근대5종(개인전), 골프(개인전) 정구(개인전) 탁구(개인전) 궁도(개인) 테니스(개인전) 트라이애슬론(개인전) 바둑(개인전, 혼성페어, 단체전)			
준단체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 종목 중 단체로 채점하는 종목	육상(계주), 수영(계영), 인라인롤러(계주) 사이클(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수중(계영) 조정(에이트, 무타포어), 카누(K4) 마라톤(종별종합), 바이애슬론(계주)	400	200	100
단체1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종목의 단체전 경기	탁구, 정구, 양궁, 펜싱, 체조, 배드민턴, 볼링(5,3인조), 테니스, 사격(소총단체 권총 단체/트랩, 스키트단체), 스퀘시(단체)	600	300	150
단체2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2개종별 이하인 종목의 단체전 경기 (단, 별도의 개인전을 실시하지 않는 종목)	근대5종(4, 5종 단체전) 골프, 궁도, 트라이애슬론	800	400	200
단체3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순수단체전으로 분류된 종목(12종목) ※ 5개팀 이하 참가 시 지급액의 25%지급 6개팀 이상~10개팀 이하 참가시 지급액의 50%지급	수구, 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검도, 하키 세팍타크로, 컬링, 아이스하키	1,000	500	250

※ 전국체전(하계·동계) 종목 중 정식종목에 한해서 적용함.

※ 종별, 득점변경 등 체전규정 변경에 따른 시상규정 적용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